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관

2008년 10월 18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그 명칭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하 연구공동체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연구공동체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1. 이 연구공동체는 전인류의 건강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건강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히 본 연구공동체는 세계화 등 새로운 사회 현상에 따른 건강 문제, 전지구적 건강 문제, 건강불평등 등에 대한 연구 영역에 집중하고, 다학제간 통합 연구를 지향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공동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국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와 교육, 출판 등의 사업
2. 건강사회의 모형개발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3.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물, 정기간행물 간행 및 홍보사업
4.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5. 건강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나라 단체와의 국제 연대
6. 기타 연구공동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공동체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자료회원 등으로 한다.
3. 후원회원과 자료회원은 이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의결권

다. 본 연구공동체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본 연구공동체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3.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 편집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연구공동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본 연구공동체의 소속지부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9 조 (징계)

1. 본 연구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회원으로서의 회칙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본 연구공동체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라. 그 밖에 임원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편집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

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과 관련 직책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공동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

나. 부대표

다. 감사

라. 편집기획위원장

제 11 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 공직에 있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3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대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부대표, 편집기획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2.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대표와 부대표의 임무)

1. 대표는 본 연구공동체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부대표가 대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공동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공동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또는 총회,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편집기획위원장의 임무)

편집기획위원장은 대표의 감독 하에 연구공동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 조 (명예대표)

1. 명예대표는 본 연구공동체 역대 대표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대표는 임원 및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에 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문)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9 조 (자문위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21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 2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5 장 임 원 회

제 24 조 (총회의 제척사유)

대표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대표 또는 임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5 조 (지위와 구성)

1. 임원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집행기구이다.
2. 임원회는 대표와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임원회는 대표가 6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임원회는 대표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 조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주소지 변경 의결
7. 정관 변경 심의
8.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재개정
9. 회원의 징계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2.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3. 기타 대표가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6 장 연구조직과 위원회

제 28 조 (연구원)

1. 본 연구공동체의 연구 사업을 위하여 본 연구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연구원을 임명한다.
2. 연구원의 편제, 임무, 자격, 노동조건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연구위원 위촉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대표는 연구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기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성)

1.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단체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대표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예산의 결산)

1. 대표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본 연구공동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본 연구공동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공동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 개정)

연구공동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규칙 제정)

연구공동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부 칙

1. 본 연구공동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공동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